

##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8월 28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(2006.1.11.)에 따라 주민이 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 하려는 것임(개정 전에는 시행령에서 일괄 규정)

### 2. 주요내용

-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함

#### ※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

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 
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련법령 발췌 : 붙임

##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시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연서 주민수)**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3조의3(조례의 제정 및 개·폐 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)은 시·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, 「주민등록법」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10조의2 (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.